

시보는 광양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시보

제25호 2022. 6. 29.(수)

고 시

- 광양시 고시 제2022-21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변경 고시 1
- 광양시 고시 제2022-218호 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 3
- 광양시 고시 제2022-220호 태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7
- 광양시 고시 제2022-222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8

공 고

- 광양시 공고 제2022-1333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사송달 공고 10
- 광양시 공고 제2022-1334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사송달 공고 11

조 례

- 광양시 조례 제1921호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

규 정

- 광양시 규정 제427호 광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동실 (☎ 797-2323, 행정2713)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변경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.

〈분할 내역〉

연번	도 로 명 주소		건물번호 변경일	건물번호 변경 사유
	변경 전	변경 후		
1	진월면 차동길 163 *일부 변경	진월면 차동길 164	2022. 6. 29.	주된 출입구 기준 건물번호 변경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2388, 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6. 29.

광 양 시 장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.

〈폐지 내역〉

연번	폐지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 폐지 사유
1	전남 광양시 봉강면 중흥로 13-14	2022. 6. 29.	건물철거 (※상세내역 붙임참조)
2	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264		
3	전남 광양시 태인5길 51-18 (태인동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2388, 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6. 29.

광 양 시 장

붙임

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

☐ 건물번호 폐지 내역

도로명	건물번호	대표지번	폐지 사유	폐지 일	고시 일
중흥로	13-14	봉강면 부저리 860-1	▶ 건물철거 (건축물대장 없음)	2022. 6. 23. (확인일)	2022. 6. 29.

☐ 현황도



국가주소정보시스템



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

붙임

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

☐ 건물번호 폐지 내역

도로명	건물번호	대표지번	폐지 사유	폐지일	고시일
태인5길	51-18	태인동 1701	▶ 건물철거 (건축과-25351(2022. 6. 23.)호에 의거)	2022. 6. 23.	2022. 6. 29.

☐ 현황도



국가주소정보시스템



광양시 기본도시스템

태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합니다.

2022. 6. 29.

광 양 시 장

1. 고시 목적 : 태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사항 열람 및 고시
2. 주요 내용
 - 가. 공간적범위: 태인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A=109,861㎡
 - 나. 시간적범위: 기준년도 2019년, 목표연도 2022년
 - 다. 내용적범위
 -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
 -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 -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
 - 자원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
 - 라. 주요 변경사항
 - 세부사업계획의 변경: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및 규모 반영 등
3. 열람 기간 및 장소
 - 가. 열람 기간 : 2022. 6. 29. ~ 7. 29.
 - 나. 열람 장소 :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
4. 의견 제출 방법
 - 가.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.
 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(061-797-28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광양시 도시재생과 비치)

광양시 고시 제 2022 - 222호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6. 29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눈소로 10 (마동) 외 6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, 27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 6. 29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7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419, 산75-1, 산75-2, 산92-1, 산92-3, 산92-4, 산92-5, 산92-6, 산92-7, 산92-11, 산92-12, 378-3, 378-4, 378-5, 378-6, 378-7, 379-3, 379-6, 379-12, 379-14, 379-15, 379-16, 379-18, 379-19, 381-2, 382-1, 382-2, 382-4, 382-5, 382-6, 382-8, 383-5, 395-1, 395-3, 396-1, 396-2, 423-2, 423-6, 424-2, 424-3, 424-4, 424-5, 425-1, 425-2, 425-3, 425-4, 425-5, 425-6, 425-7, 425-9, 425-11, 425-12, 425-13, 426-1, 426-2, 426-3, 426-4, 426-5, 426-6, 427-1, 427-2, 427-3, 427-4, 428-2, 428-3, 428-4, 428-5, 451, 452, 452-1, 453-2, 453-3, 453-4, 853-3, 853-15, 853-16, 856-13, 856-14, 856-15, 856-21, 856-22, 856-23, 873, 875	전라남도 광양시 성황수동로 21 (성황동)	20220629	20210210	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마을지명에서 인용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4-1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722	20220629	20081001	신재 최산두 선생의 호에서 인용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69-1	전라남도 광양시 눈소로 10 (마동)	20220629	20111229	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845-7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31	20220629	20081001	신재 최산두 선생의 호에서 인용
5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422-1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141-24	20220629	20220112	대치재의 지형지물에서 인용
6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720-1	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2길 15	20220629	20180516	매천 황현 사당 및 생가에서 인용
7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448-1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이천길 36	20220629	20210811	행정리명에서 인용

공고 제2022-1333호

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우리 시 광양읍 덕례리 1555번지(광양서천) 일원 하천구역 내에 『하천법』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무단적치 한 자에 대하여 『하천법』 제69조 및 『행정대집행법』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,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9일

광 양 시 장

1. 공고사항 :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6. 29. ~ 2022. 7. 6. (7일간)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
 - 가. 위 치 : 광양읍 덕례리 1555 일원 광양서천
 - 나. 소 유 자 : 미 상
 - 다. 주 소 : 미 상
 - 라. 위반사항 : 하천구역 내 텐트 무단 적치
4. 게시장소 : 광양시 홈페이지, 시보, 게시판 공고
5. 처분근거 :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, 제4조
6. 계고서내용 : “별 첨”

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우리 시 광양읍 칠성리 595번지(광양서천) 일원 하천구역 내에 『하천법』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무단적치 한 자에 대하여 『하천법』 제69조 및 『행정대집행법』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,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9일

광 양 시 장

1. 공고사항 :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6. 29. ~ 2022. 7. 6. (7일간)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
 - 가. 위 치 : 광양읍 칠성리 595 일원 광양서천
 - 나. 소 유 자 : 미 상
 - 다. 주 소 : 미 상
 - 라. 위반사항 : 하천구역 내 텐트 무단 적치
4. 게시장소 : 광양시 홈페이지, 시보, 게시판 공고
5. 처분근거 :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, 제4조
6. 계고서내용 : “별 첨”

광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
(2022. 6. 10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의회 위원회
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를
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6월 29일

광 양 시 장 정 현 복

광양시 조례 제1921호

붙임 :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

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6인”을 각각 “7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상 임위원회와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상임위원회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 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 원회의 정수로 한다.</p> <p>1. 의회운영위원회 : <u>6인</u> 이내 2. 총무위원회 : <u>6인</u> 이내 3. 산업건설위원회 : <u>6인</u> 이내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7인</u> --- 2. ----- <u>7인</u> ---- 3. ----- <u>7인</u> ---</p>

광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
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6월 29일

광 양 시 장 정 현 복

광양시 규정 제427호

붙임 : 광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광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9항에 따라 광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관부서”란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.
2. “처리부서”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규정은 광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광양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광양시 청원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청원심의회 원칙)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, 시 소속 공무원 3명을 내부위원으로 하고, 4명은 외부위원

으로 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③ 「청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내부위원은 부시장, 주관부서의 장, 감사·조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은 행정,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되, 감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심의회 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

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

다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
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9조(심의회 개최 요구 및 처리)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,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·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건	
일시	. . .
검 토 의 견	

위원 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 건	
일 시	. . .
심 의 결 과	

< 광양시 청원심의회 위원 >

구 분	성 명	심 의 의 견			서 명
		찬성 <small>(심의결과 동의)</small>	반대 <small>(심의결과 반대)</small>	비고	
위원장					
위원					

